

# 2026년 부산 항공부품산업기술고도화지원사업 기술개발(R&D)지원계획 공고

부산지역 내 항공부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, 부산지역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,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「부산 항공부품산업기술고도화지원사업 R&D지원계획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지역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2월 2일

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

## 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항공부품기술고도화지원사업
- 사업목적
  - 차세대 항공시장(신기종 민항기, 방산무인기, AAM 등)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, 급성장 추세, 혁신기술 확보 등에 대한 요구도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대응 가능한 항공핵심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추진
- 사업내용
  - 부산지역 항공소재부품 중소기업대상 글로벌 공급망 수요에 대응 가능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

| 내역사업     | 항공부품기술고도화지원사업 R&D지원  |
|----------|--|
| 지원유형     | 지정공모   |
| 지원기간     | 1년 (협약일 ~ 12월31일까지)  |
| 지원규모     | 2026년 1억원 내외(기술위원회 결과에 따른 차등지급) / RFP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추진체계     | 부산지역 본사 or 연구소 or 공장 소재 중소기업 단독 수행 (총사업비 40%이하 위탁 연구 가능 / 중소기업 위탁만 허용) |
| 기술료 징수요부 | 해당 없음  |
| 기업분담금    | 연구개발 지원금의 10%이상 현금 매칭  |

## 2 지원내용

- (지원유형) 지정공모로 과제별 RFP를 참조하여 1개 과제만 참여 가능(주관, 위탁 모두 해당)
- (추진체계) 중소기업 단독 수행이며, 총 사업비 40% 이하로 위탁연구 수행 가능 ▶ 위탁연구기관 중도 변경 불가
 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, 중견·대기업은 참여 불가
  - 위탁연구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, 과제 내 지역혁신기관, 연구기관, 대학 등 참여 불가능

### ○ (지정공모 과제 목록) 과제별 RFP 참조

| 순번 | 관리번호         | 과제명  | 공모형태     |
|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-|
| 1  | 부산-항공-R&D-07 | 항공용 열가소성 복합소재 성형 및 접합용 고온/고정밀 온도제어 시스템 국산화 개발                | 지정<br>공모 |
| 2  | 부산-항공-R&D-08 | 국산 NPU 기반 저전력 엣지 AI 특화 SoC를 탑재한 소형무인항공기용 초소형 AI 통합 제어 컴퓨터 개발 |          |
| 3  | 부산-항공-R&D-09 | 글로벌 민항기 엔진 탑재용 고온,고압 Flexible Duct Assembly 설계 및 제조 기술 국산화   |          |

- (지원예산) '26년 해당과제 3개 과제 - 수요조사 평가결과 기반으로 1억원 내외 차등지급
- (기술료) 본 과제는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
- (기업부담금) 과제별 총 지원예산의 10%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
- (사업비 집행) 별도 사업비 통장 개설 후 사업비 현금 지급
  - 상황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지급 ▶ RCMS 등 전자집행 대상 아님
  - 지정 회계법인에 사업비 사용 검증 필수(사업비에 회계수수료 반영)

## ○ 평가기준

| 평가항목           | 세부항목              | 비고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기술성<br>(30점)   | ○ 기술개발 개요(15점)    | • 최종 산출물의 사업 목적과 부합성, 기술개발 차별성 등  |
|                | ○ 사업목표 및 내용(15점)  | • 정량적 목표, 연차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, 사업목적 부합성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성<br>(30점)   | ○ 사업화 계획(15점)     | •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, 사업화 타당성,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등   |
|                | ○ 매출효과(15점)       | • 매출·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,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   |
| 경영능력<br>(10점)  | ○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(5점) | •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, 수행역량 등  |
|                | ○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(5점) | • 사전준비 및 계획수립의 우수성, 실적 및 핵심 기술 보유 여부,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역생태계 기여도(30점) |                   | • 거래업체와의 동반성장 효과 등 지역생태계 조성 측면과의 부합성 등<br>• 기술개발 및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|

## 3 추진절차

| 단계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사업공고     | 공고일 ~ 2026년 2월 23일까지    | 부산TP 홈페이지 |
| 계획서 접수   | 우편 or 이메일접수             | 공고문 참고    |
| 계획서 평가   | 선정평가 : 일정 별도 통보         | 평가기준 참조   |
| 계획서 수정   | 신청서 수정 : 사업계획 및 사업비 수정  | 선정기업→부산TP |
| 협약체결     | 협약체결 : 일정 별도 통보         | 부산TP↔기업   |
| 과제수행     | 기간 : 선정일로부터 ~ 12월 31일까지 | 선정기업      |
| 1차년 결과제출 | 기간 : 12월 31일까지          | 선정기업→부산TP |

※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4 신청서 접수 및 평가방법

-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6. 02. 23.(월), 18:00 까지
  - 서류 도착시간 기준 미도착시 접수 불가
-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(전송 이후 접수확인요망)
- 접수처

| 접수처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부산테크노파크<br>우주항공방산센터 | 이현승 연구원<br>(051-831-7801)<br>leehs1620@btp.or.kr | 부산광역시 강서구<br>미음산단5로4번길 21, 4층 |

- 제출서류 (※ 신청서 파일 참고, 지원내용마다 신청서 상이)

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|
|--|-----|
| ①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식1 |
| ② 사업계획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식2 |
| ③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     | 서식3 |
| ④ 참여 협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식4 |
| ⑤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식5 |
|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원본대조필 날인 요망)              |     |
| ⑦ 최근 3년간 기업재무제표 (일반과세자의 경우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) |     |
| ⑧ (공고일 이후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본 1부      |     |
| ⑨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                  |     |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#### ○ 평가방법

- 대면평가 (평가일정 안내 시 세부방법 개별안내)
- 평가위원회 구성은 외부전문가 5~7인으로 구성
- 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 평균점수로 선정  
(※ 단, 7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)
- 평가결과 통보 및 지원 대상 과제 확정

※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개별 통보

※ 탈락기업에 대한 개별 통보 생략

## 5] 유의사항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하위규정과 「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」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
-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(단년 또는 다년) 및 연구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
- 시설·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
- 본 사업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의거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함. 단, 일부 사업의 특성상 별도 정하는 기준은 그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
  - 본 사업은 연구수당을 편성할 수 없음
  -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30%이내, 간접비는 직접비의 10%이내
  -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 불가
- 본 과제의 필수 성과지표로 사업화 고용 및 매출을 과제 시작부터 종료후 2년간 전담기관에게 성과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

## 6] 지원제외대상

-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
- 휴·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⑥ 문의처

- 지원사업 관련 문의 : 접수처와 동일